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7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7,776,480원 및 지방교육세 5,778,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7.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 8. 16. B 주식회사와 사이에 C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 D 공장용지 4,6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 11. 잔금을 지급하고, 2018.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제78조 제8항,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1. 3. 16. 조례 제6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시 E 공장용지 7,152㎡(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3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연접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공장(4.989.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8. 1. 11.[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도지사는 2023. 1. 1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2. 8. 원고에게 취득세 67,776,480원, 지방교육세 5,778,470원, 합계 73,554,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계약 체결,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C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수 제안을 받았고, 이 사건 연접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업무 지연 등으로 건축이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

가) 원고는 2018. 7.경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8조(특약사항)에는 '산업단지 업종계획변경(당초: 전기장비, 변경: 물류시설) 및 ◯◯시 입주승인 조건이며, 조건사항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7. 12. B 주식회사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11. 9. 위와 같은 계약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공장 건설과 관련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착공계획] - 원계획: 2018년 상반기 설계 완료 및 인허가, 2018년 하반기 기초토목공사, 2019년 3분기 내 준공 및 가동 - 변경계획: 2020년 상반기 설계 완료 및 인허가, 2020년 하반기 기초토목공사, 2021년 3분

2)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기 내 준공 및 가동 [비고(착공계획의 변경 사유에 대한 시간대별 진행사항)] - 2017년 8월 설계계약 - 2018년 7월 설계 중 이 사건 연접토지 용도변경 가능성 전달받고(◯◯시, 분양사) 추가매입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18년 11월 이 사건 연접토지 용도변경 어려움 통보받고 계약금 반환 - 2019년 1월 다시 축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경 설계 개시 - 2019년 3월 ◯◯시로부터 다시 이 사건 연접토지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 가능성으로 해당 필지 매입 의견 문의 - 2019년 5월 및 11월 원고는 두 차례 추가토지매입 의견 전달

다)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10.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연접토지 지상 이 사건 건축물 건축 과정

가) 원고는 2017. 8. 28.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5. 21.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에서 제출한 설계 진행 과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설계계약: 2017. 8. 28. 연면적 약 1,200평으로 계약 (1) 2017. 9. - 생산설비 확정 문제로 설계 잠시 보류 (2) 2018. 4. ~ 2019. 5. - 1~2달 간격으로 레이아웃 협의 미팅 진행 - 2019. 5.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원고의 요청으로 설계 중단 (3) 2020. 2. -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가 필지로 인한 변경으로 검토 요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 변경된 배치안으로 인한 레이아웃 재설계

2. 변경계약: 2020. 5. 21. 연면적 증가(1,200평 → 1,500평)

(1) 2020. 5.

- 바뀐 연면적으로 인한 변경 레이아웃 협의

(2) 2020. 6.

- 최종 기본설계 협의 및 확정

나) 원고는 2020. 10. 26.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축공사계약(2020. 10. 26.)

-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연접토지
- 착공연월일: 2020. 11. 2.
- 준공예정연월일: 2021. 6. 30.
- 계약금액 7,211,160,000원

2. 변경계약(2021. 1. 19.)

구 분	당초	변경
계 약 금 액	7,211,160,000원	6,426,200,000원
공 사 기 간	2020. 11. 2. ~ 2021. 6. 30.	2020. 11. 2. ~ 2021. 7. 31.
기타변경사유		사유: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금액변경 및 공기연장

3. 변경계약(2021. 7. 21.)

구 분	당초	변경
계 약 금 액	6,426,200,000원	변동없음
공 사 기 간	2020. 11. 2. ~ 2021. 7. 31.	2020. 11. 2. ~ 2021. 9. 30.
기타변경사유		사유: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4. 변경계약(2021. 9. 30.)

구 분	당초	변경
계 약 금 액	6,426,200,000원	6,681,400,000원
공 사 기 간	2020. 11. 2. ~ 2021. 9. 30.	2020. 11. 2. ~ 2021. 10. 3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기타변경사유		사유: 추가공사로 인한 금액변경 및 공기연장

5. 변경계약(2021. 12. 10.)

구 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6,681,400,000원	6,667,650,000원
공사기간	2020. 11. 2. ~ 2021. 10. 31.	2020. 11. 2. ~ 2021. 12. 10.
기타변경사유		설비공사 증액 24,750,000원 부대토목공사 감액 38,500,000원 최종변경 감액 13,750,000원

다) 원고는 2020. 9. 25.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20. 11. 16. 착공하였으며, 2021. 12.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1. 12.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장등록을 마쳤다.

3) 취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

한편, 원고는 2022.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시 기업지원과는 취득세 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주요추진사항

1) 해당 공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7. 8. 4.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연접토지를 추가하여 2020. 9. 4.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2) 변경계약 전 부지 입주계약 후 2년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아,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라 2019. 11. 27. 입주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였음

3) 제출된 착공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부지 외 추가부지 구입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다. 부서의견

1) 산단내 미분양 토지를 적극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입주업종이 맞지 않아 우리 시가 지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참여한 B 주식회사에서 산업단지 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0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경감되나,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8조 제1호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과 영업 착수 등 산업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있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취지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자 원고에게 착공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착공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 ○○시 기업지원과는 'B 주식회사에서 산업단지 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B 주식회사의 매입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8. 11. 9.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3.경 재차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입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반환받은 이후 피고로부터 재차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입 권유를 받기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생산설비 확정 문제 및 이 사건 연접토지의 매입 가능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성으로 설계가 잠시 보류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F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2017. 8.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2018. 11. 9.까지 약 14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후 이 사건 연접토지를 취득하여 설계계약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0. 5. 21.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접수가 이루어진 2020. 8. 24.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계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설계 진행 과정 내역(갑 제6호증의 6)에 의하면, 2018. 4.부터 2019. 5.까지 1, 2달 간격으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레이아웃 협의 미팅을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연접토지의 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9. 3.경 피고로부터 재차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입 권유를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입주계약 확인 통보가 지체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지 여부는 원고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접토지의 용도변경 지연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입주계약 확인 통보 지체가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으로 볼 수도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면적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한 비용 효율성 내지 경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장 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위와 같은 결정은 원고의 경영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신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객관적인 사유로 이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1. 13.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0. 5. 21.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다시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10. 26.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20. 11. 16.이 되어서야 이 사건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소스공장으로 기계장치 등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준비기간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건축물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소요기간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유예기간 내인 2020.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여 그 무렵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유예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2. 10.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그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누구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라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연접토지의 취득 경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경과, 원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비용 효율성 내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취지나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최○○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1. 3. 16. 조례 제6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끝.